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재)공고

2026년 제7회(재공고), 제11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관리의사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1명	○ 진료 및 건강상담 ○ 각종 검사 결과 판독 및 판정 ○ 예방접종 예진 업무 ○ 시민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 재난 상황 시 업무 지원 및 기타 보건소장이 명하는 업무	보건정과
동물사육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1명	○ 동물원 동물사육 및 동물사 관리 ○ 동물행동풍부화, 긍정강화훈련 ○ 동물복지, 보건활동, 생태설명회 ○ 사료관리, 번식관리 등 제반사항 ○ 동물전시환경 개선 및 개발	동물원
노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 공무직 및 환경관리원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 전주시출연기관 노동법률 상담자문 및 사건대리 ○ 노동관서 관련 업무 추진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노무관리 지원 ○ 노무관련 훈령·규정·지침 제·개정 관리 ○ 노동조합 협약 등 이행사항 추진	총무과
인권옹호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 인권침해 상담·조사 등 구제업무 - 인권침해 상담·진정사건 예비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검토 등 ○ 인권실태조사 -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 조사결과 보고·검토, 개선사항 점검 등 ○ 인권네트워크 기획·조정 등 - 인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인권포럼 개최 등 ○ 인권교육 등	인권법무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장애인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6급 (일반임기제)	1명	○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수립 ○ 장애인 정책 발굴 및 국비 확보 대응 ○ 장애인단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권익증진사업 추진 등	장애인복지과

2. 임용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 2026.6.30.)

3.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사항 ※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 시 자 격
관 리 의 사 (지 방 의 무 5 급 / 일 반 임 기 제)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치과, 한의사 제외)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의료 관련 실무경력
동 물 사 육 (지 방 농 업 9 급 / 일 반 임 기 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또는 법인동물원으로 등록된 동물원 근무경력
노 무 관 리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나 급)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 시 자 격
인 권 옹 호 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나 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신고 상담·조사 등 임용분야 관련 업무 ※ 우대사항 : 법학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팀장 (지 방 사 회 복 지 6 급 / 일 반 임 기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지체장애인이면서,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분야 저서 1권 이상 저술 또는 논문(학술지, 학위) 1편 이상 실적 ② 장애인분야 연구소 대표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경력(10년 이상) ③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 경력(5년 이상)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중증장애인은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양육자는 10년)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 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5. 근무기간 등

- 가. 근무기간 : 1년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업무실적 등에 따라 연장가능)
- 나. 근무시간
- 관리의사, 동물사육, 장애인복지팀장 : 주 40시간(1일 8시간)
 - ※ 동물원 근무 특성상 휴일근무명령 가능
 - 노무관리, 인권옹호관 : 주 35시간(1일 7시간)

6. 보수수준

분 야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관 리 의 사	지 방 의 무 5 급 (일반임기제)	-	69,663천원	주 40시간
동 물 사 육	지 방 농 업 9 급 (일반임기제)	54,678천원	31,876천원	주 40시간
노 무 관 리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나 급	75,780천원	50,495천원	주 35시간
인 권 옹 호 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나 급	75,780천원	50,495천원	주 35시간
장 애 인 복 지 팀 장	지 방 사 회 복 지 6 급 (일반임기제)	86,606천원	57,708천원	주 40시간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비중·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 120% 범위 내에서 책정

나.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적용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10.(화)

다. 원서접수 : 2026. 11. 6.(금) ~ 11. 10.(화) / 3일간

라.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익일특급만 가능)

- 등기우편(익일특급)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아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증 표기 (예시) '0000분야 응시원서 재증'

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26. 11. 16.(월) 예정

사. 면접시험 : 2026. 11. 23. 주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 일정 기재)

아.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월 중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재공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게시

8. 제출서류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자 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 제8호'를 해당부서에서 확인받아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차.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 [5급 : 1만원, 6~7(나~다)급 : 7천원, 8~9(라~마)급 : 5천원]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10.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동일회차 다른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라.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063-281-2142)
- 업무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관 리 의 사	보 건 행 정 과	☎ 063-281-6240
동 물 사 육	동 물 원	☎ 063-281-6750
노 무 관 리	총 무 과	☎ 063-281-2913
임 권 응 호 관	인 권 법 무 과	☎ 063-281-2247
장 애 인 복 지 팀 장	장 애 인 복 지 과	☎ 063-281-2315

붙임 별지서식 (1~8호 서식) 각 1부.